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내 수 면 어 업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,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체장 정비(안 제17조, 별표 1)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‘열목어’가 포함됨에 따라, 법령 합치성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·채취를 금지하고, ‘은어’ 학명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.

* 포획·채취 금지기간 규제 재검토(3년) 과정에서 은어(학명 정비), 열목어(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따른 삭제)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개정 필요성 제기(‘22.3)

나.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등 기준 명확화(안 제18조, 별표 2)

일정기간 내 법령상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,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중기간과 종료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, 행정처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*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 ‘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’ 의결 및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이행 권고(권익위, ‘21.3.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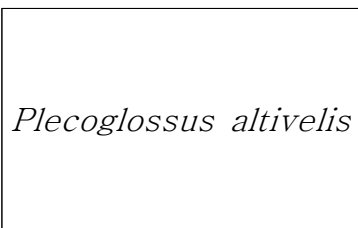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
별표 1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중 “다시”를 “그 처분 후 다시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2 제1호나목1)부터 3)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목(종전의 다목) 3)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1]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·구역 및 체장(제17조 관련)				[별표1]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·구역 및 체장(제17조 관련)			
1.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				1.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			
품명	학명	금지구역	금지기간	품명	학명	금지구역	금지기간
가. 은어	<i>Plecoglossus altivelis</i>	강원도 및 경상북도	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,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	가. 은어	<i>Plecoglossus altivelis</i>	강원도 및 경상북도	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,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
		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,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. 다만, 인공적으로 조성한 담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.			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,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. 다만, 인공적으로 조성한 담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.
나. 연어	<i>Oncorhynchus keta</i>	전국	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	나. 연어	<i>Oncorhynchus keta</i>	전국	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
다. 빙어	<i>Hypomesus nipponensis</i>	전국	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	다. 빙어	<i>Hypomesus nipponensis</i>	전국	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
라. 쏘가리	<i>Siniperca scherzeri</i>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	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. 다만, 담·호소(湖沼: 호수와 늪)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.	라. 쏘가리	<i>Siniperca scherzeri</i>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	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. 다만, 담·호소(湖沼: 호수와 늪)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.
	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. 다만, 담·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.			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	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. 다만, 담·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.
마. 열목어	<i>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</i>	전국	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	마. 참계 동남참계	<i>Eriocheirsinensis</i> <i>Eriocheirjaponicus</i>	강원도. 다만, 댐은 제외한 다.	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바. 참계 동남참계	<i>Eriocheirsinensis</i> <i>Eriocheirjaponicus</i>	강원도. 다만, 댐은 제외한 다.	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	바. 다슬기	<i>Semisulcospira s. pp.</i>	전국	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
사. 다슬기	<i>Semisulcospira s. pp.</i>	전국	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	사. 뱀장어	<i>Anguilla japonica</i>	전국. 다만, 댐·호소는 제외한다.	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. 다만,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
아. 뱀장어	<i>Anguilla japonica</i>	전국. 다만,	10월 1일부터 다음				

		해 3월 31일까지. 다만, 수산종자로 사용 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.
--	--	---

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<신 설>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

		만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)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<u>인정되는</u> 경우	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)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<u>인정하는</u> 경우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37